

-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[별표2]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업인
- ※ 농업경영체 등록(변경 등록) 확인서로 가축마릿수 확인
- 제3차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중복 지급된 사람

● **임업인**

지원요건	확인서류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21. 7. 19.(월) 현재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 (농업경영체당 1명만 신청 가능) ①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품품질관리원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 • 신청인의 직전 연도(2020년) '농어업외종합소득금액'이 3,700만원 미만으로 해당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 • 공부지목상 임야에서, 재배품목에 버섯류, 산나물류, 약초류, 약용류가 포함되어 있을 것(세부품목은 별첨3 참조) 	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

● **제외대상**

- 법인
- 신청자의 직전연도 '농업외 종합소득금액'이 「농업·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」기준금액(3,700만원) 이상인 사람
- 제3차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별 중복지급 불가

● **운수종사자**

지원요건	확인서류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 사무소를 강릉시에 등록된 업체에 소속된 운수종사자이거나 강릉시에 등록된 개인운수 종사자로 • 지급기준일('21. 7. 19.) 이전부터 지급일 현재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자격을 취득하고 신청일까지 근로중이고 •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(https://drv.kotsa.or.kr)에 가입된 종사자 	운전자격증서본

● **중복·부정수급**

-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, 중복수급·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
- 제3차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중복지원자(농업인 등)

● **예술인**

지원요건	확인서류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21.7.19.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강릉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19세 이상의 예술인 중,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유효자 ('21.7.19. 기준) 	예술활동증명서

● **지원 제외대상**

- '21.7.19. 기준 예술활동증명 미완료(신청중)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
- 제3차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별 중복 신청자

신청 문의

강릉시 일자리경제과

(생활경제부서)

☎ 640-5959~5961, 660-2018

및 지원대상 분야별 담당부서

● 지원대상 분야별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●

지원대상 분야	담당부서	전화번호
소상공인	일자리경제과	640-4254, 5847
농업인	농정과	640-5164, 5398
어업인	해양수산과	640-5195, 5375
축산인	동물정책과	640-5174, 5592
임업인	산림과	640-5185, 5186
운수종사자	교통행정과	640-5251, 5252
예술인	문화예술과	640-5116, 5117



제3차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안내



지금 신청하세요!!



지금기준



행정명령업종 (소상공인)

● 지원대상

- '21. 7. 19.(월) 현재 강릉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(개업연월일 기준)을 둔 사업체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으로 집합금지·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

● 지원업종 및 지원금액

구분	해당업종	지원금액
집합금지	①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·나이트, 감성주점, 헌팅포차)	150만원
영업제한	①콜라텍, 무도장 ②홀덤편, 홀덤편게임장 ③식당·카페 ④노래(코인)연습장 ⑤목욕장업 ⑥방문판매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⑦실내체육시설(고강도) ⑧학원 ⑨영화관, 공연장 ⑩독서실, 스터디카페 ⑪결혼식장 ⑫장례식장 ⑬이·미용업 ⑭실내체육시설(중, 저강도) ⑮유원시설 ⑯오락실, 멀티방 ⑰상점, 마트, 백화점(300㎡ 이상) ⑱카지노 ⑳PC방	100만원
그 외	①스포츠 경기장 ②경륜, 경정, 경마장 ③미술관, 박물관 ④실외체육시설 ⑤숙박시설 ⑥파티룸 ⑦도서관 ⑧키즈카페 ⑨돌잔치전문점 ⑩전시회, 박람회장 ⑪마사지업소, 안마소	100만원

● 지금기준

-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(나머지 대표자 동의 필요)
-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지원

● 제외대상

- 무등록사업자, 비영리기업·단체·법인, 법인격 없는 조합 제외
*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, 「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
- 집합금지(영업제한)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 지원 불가
- 제3차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별 중복지급 불가

추가업종

● 농업인

지원요건	확인서류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'21. 7. 19.(월) 현재 농업경영체 로 등록되어 있는 자 (농업경영체당 1명만 신청 가능) ※ 타시도 전출입 및 경영체 등록말소·재등록의 경우 전입 및 경영체 재등록 시점적용 · 신청인의 직전 연도(2020년) '농어업외종합소득금액'이 3,700만원 미만으로 해당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※ '21년도 기본형 공약직불금 대상자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제외

기준일 `21. 7. 19(월) * 강릉시 강화된 4단계 명령일

대상 소상공인(집합금지, 영업제한) · 농업인 · 어업인 · 축산인 · 임업인 · 운수종사자 · 예술인

지원금액 소상공인 100만 원 (※ 집합금지 150만 원)
/ 추가업종 30만 원

접수기간 11. 1.(월) ~ 11. 26.(금)

- (온라인) 11. 1.(월)~11. 26.(금)

- (오프라인) 11. 8.(월)~11.26.(금)

※ 이의신청 : 11.15.(월)~12.3.(금)

지원수단 강릉사랑상품권(강릉페이)

※ 사용기한 : '22. 2. 28.(월)

신청방법 온 · 오프라인

- (온라인) 강릉페이 앱 또는 강릉시 홈페이지

- (오프라인) 주민등록 읍면동주민센터

※ 소상공인 : 영업장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

- ①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
- ② 농어업외종합소득금액 :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금액(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)에서 농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

● 제외대상

- 법인
- 신청자의 직전연도 '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'이 「농업·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」 기준금액(3,700만원) 이상인 사람
- 제3차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별 중복지급 불가

● 어업인

대상	신청(지급) 자격 요건	지원금액
어업경영주	'21. 7. 19.(월) 현재 강릉시에 어업기반을 두고,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(어업경영체 당 1명만 신청 가능)	1인당 30만원
어업종사자	어업활동을 위하여 '21. 7. 19.(월)을 포함한 30일 이상 계속 어업경영주에 고용된 어업종사자	

● 제외대상

-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
- 신청자의 직전연도(2020년) '농어업외종합소득금액'이 「농업·농촌공익직불법시행령 제6조제1항」 기준금액(3,700만원) 이상인 사람
- 제3차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별 중복지급자

● 축산인

지원요건	확인서류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'21. 7. 19.(월) 현재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 (농업경영체당 1명만 신청 가능) ※ 타시도 전출입 및 경영체 등록말소·재등록의 경우 전입 및 경영체 재등록 시점적용 · 신청인의 직전 연도(2020년) '농어업외종합소득금액'이 3,700만원 미만으로 해당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 · 축산업허가 및 등록을 득한자 ·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<붙임2> 축산농업인의 가족사육 기준을 충족하는 축산인 	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축산업 등록·허가증

● 지원

* '농·어업외종합소득금액'이란,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금액(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)에서 농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

● 제외대상

-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
- 2020년도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「농업·농촌공익직불법시행령 제6조제1항」 기준금액(3,700만원) 이상인 자
- 축산법 제22조 1항 및 3항에 따른 축산업 미등록 및 미허가 축산농가